

평창청성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38
------------	-----

제안연월일 : 2025. 6.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평창청성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개요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회의 동의)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7호(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평창청성골프연습장
- 소 재 지: 평창읍 살구실길 53-10(후평리 373-4번지 일원)
- 계약현황: 전세권 설정
 - 소유자: 농업회사법인 청성애원주식회사(대표이사 김철귀)
 - 보증금: 금700,000,000원(금칠억원)
 - 존속기간: 2021. 11. 3. ~ 2031. 11. 3.
- 시설규모: 골프연습장 1동(968.74m^2), 주차면수 25면
- 시설내용: 연습장, 골프망, 골프공 공급기, 세척기 등

□ 위탁내용

- 위탁시설: 평창청성골프연습장
- 위탁자: 평창군
- 수탁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2025. 7. ~ 2030. 6. (5년)
- 위탁내용: 평창청성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

3. 위탁운영계획

- 운영시간
 - 주6일 운영(월요일 휴장), 06:00 ~ 22:00 운영
※ 동절기(11월 ~ 3월) : 07:00 ~ 21:00 탄력적 운영 가능
- 관리인력: 3명
- 연간 예상 소요예산

(단위: 천원)

계	170,000	산출내역
인건비	94,000	관리인력 3명
사무관리비	10,000	승강기 안전관리용역비 및 소모품 등
공공운영비	26,000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상하수도, 통신비 등)
	20,000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20,000	시설 운영물품 구입비

4. 위탁 타당성 검토

- 평창골프연합회와의 위탁종료(2025. 5. 31.)에 따라 골프연습장 이용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 공공용 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관리주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기대효과

-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 주민에게 제공
-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인력 운영 등에 대한 행정부담 완화

6. 향후계획

- 위·수탁 계약 체결: 2025. 6.
- 시설물 위탁 관리운영: 2025. 7. ~ 2030. 6. (5년)

7. 참고사항

- 위치도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 9. 생략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 4. 생략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⑧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⑤ 생략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 3. 생략

② 생략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 8. 생략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 12. 생략

②~③ 생략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설립 · 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단의 설립 · 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생략

제7조(의회의 동의)

- ① 군수는 제4조 각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
- ② 생략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7.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500억원 미만,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가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제76조에 따른 공사 또는 공단의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시장성테스트[별첨3-1],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정원이 4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행한다.

지방공기업 설립기준【별첨 3-1】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 시 적정사업에 해당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직접 기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